

# 『구미시 공공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안』 심 사 보 고 서

## 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: 2023년 3월 2일

나. 발 의 자 : 추은희, 강승수, 김근한, 김낙관, 김민성, 김영길,  
김영태, 김원섭, 김재우, 김정도, 김춘남, 박교상,  
박세채, 소진혁, 신용하, 안주찬, 양진오, 이명희,  
이상호, 이정희, 이지연, 장미경, 장세구, 정지원,  
허민근 의원(25명)

다. 회부일자 : 2023년 3월 3일

라. 상정일자 : 2023년 3월 13일

제26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
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## 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추 은 희 의원

나. 제안이유

- 기계설비공사의 경우 건설공사에 포함하여 통합 발주되는 사례가 많아 하도급으로 인한 공사의 품질저하 및 부실시공, 책임문제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
-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77조에

따라 설계서가 별도로 작성되거나 독립적인 시공이 가능한 기계설비 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제정하여 공공건축물의 품질향상 및 부실시공을 방지하고자 함.

## 다. 주요내용

- 용어의 정의와 적용범위(안 제2조~제3조)
- 시장 및 기계설비공사업자의 책무(안 제4조~제5조)
- 기계설비공사의 분리발주에 관련한 사항(안 제6조)
- 준용 규정(안 제7조)

## 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77조,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2조, 제8조,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
- 기 타 : 조례안 예고(2023. 3. 3. ~ 3. 8.)결과 의견없음

## 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김 용 덕

- 본 「구미시 공공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안」 은
  - 공공건축물 공사 발주 시 기계설비공사를 건설공사에서 분리하여 발주할 수 있다는 내용의 제정조례안으로,
  - 기계설비공사를 분리 발주함에 따라 불법·불공정 하도급 행위로

인한 공공건축물의 품질저하 및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관내 전문  
건설업체 육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.

- 다만, 기계설비공사를 분리발주 할 경우 종합건설업체의 반발  
등이 예상됨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     략

5. 토      론      요      지 : 생     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     음

7. 심      사      결      과 : 원안가결